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2명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신용하·김낙관·김민성·김영태
김원섭·김재우·김정도·박세채
소진혁·이명희·이지연·정지원
추은희 의원(13명)

1. 제안이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참가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청소년의 참가신청을 받아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연 6회 내외로 개최한다. 다만,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 우수한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구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연 6회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연간 사업비 20,000천원)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구미시의회 의원 신용하